

##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(연속혈당측정용 전극)

※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를 받거나 국외 체류기간 중 구입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.

※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최초 발행시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.

※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앞 쪽)

### ① [ ] 재발급

② 수진자	건강보험증번호	주민(외국인)등록번호		
	성명	전화번호 (자택) (휴대전화)		
진료과목		상병명		상병코드

### 처방전 확인사항

③ 구분	④ 확인사항
[ ] 1형 당뇨병	[ ] 연속혈당측정 시작일 ( ) ~ 종료일 ( ), 기간 동안 착용일수 ( )일 또는 착용비율 ( )%
[ ] 임신 중 당뇨병 - 분만예정일( )	[ ] 당 평균값 ( ) mg/dl [ ] 변동계수 ( )% 혹은 표준편차 ( ) mg/dl [ ] 당화혈색소 검사내역 : 시행일 ( ), 검사수치 ( )%

※ 임신 중 당뇨병환자는 인슐린 투여자에 한하여 처방 가능합니다. 또한, 임신할 때마다 최초 처방 시 분만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며,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요양비가 지원됩니다.

### 처방 및 지시사항

⑤ 총 처방기간	( ) 일	※ 총 처방기간은 100일(최초처방은 30일) 이내로 처방이 가능합니다.
처방전 사용기간	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	※ 사용기간 내에 구입·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월 일

요양기관명(기호) : ( ) (요양기관 직인)

담당의사 성명(면허번호) : (제 호)

전문과목(전문의 자격번호) : (제 호) (서명 또는 인)

### [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품 구입 시 유의사항]

1. 총 처방기간은 등록 제품별 사용가능일수를 고려하여 최대 100일(최초처방은 30일)이내로 처방이 가능합니다.

2. 구입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\*는 처방전의 기재된 총 처방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\* (총 사용가능일수) 등록 제품별 구입한 개수와 1개당 사용가능일수를 곱한 값의 합

(예시) 전극 제품 14개를 구입하고 1개당 사용가능일수가 7일인 경우 총 사용가능일수 98일(14개\*7일)

※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가 모델명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의 정책센터에서 그 내용을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### 유의사항

- 1.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
  - 2.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.
  - 3.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·소아청소년과·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.(임신 중 당뇨병은 산부인과 전문의 발행 가능)
  - 4.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.(다만, 최초처방은 30일 이내)
    - 등록제품별 '사용가능일수(일/1개)' 를 고려하여 처방기간 기재
    - 인슐린을 투여하는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분만에정일로부터 15일까지 요양비 지원
  - 5.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처방해야 합니다.
  - 6.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은 아래 표의 일당 기준금액에 구입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\*를 곱하여 산정합니다. 다만, 구입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는 총 처방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\* 구입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: 제품별 구입개수와 사용가능일수를 곱한 값의 합

지원대상자		기준금액
1형 당뇨병환자	19세 미만*	11,000원/일
	전체	10,000원/일
임신 중 당뇨병환자	인슐린 투여	10,000원/일

\* 인슐린자동주입기(센서연동형, 복합폐쇄회로형)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

#### 비고 : 나이는 처방일 기준

- 7.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,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8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4조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중에 구입한 경우,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9.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제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방전을 제출하는 경우, 자동으로 처방전등록번호가 부여되며, 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### 작성방법

-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“재발급” 에 [✓]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.
- ②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,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  - 외국인(재외국민)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  -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(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)
- ③ 구분에 해당되는 항목에 [✓] 표시를 기재합니다.
  - 당뇨병 유형에 따라 해당되는 항목에 [✓] 표시를 기재합니다.
  - 임신 중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 투여자만 처방 가능하며, 임신할 때마다 최초처방 시 분만에정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
- ④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[✓] 표시를 한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.(직전 처방기간 내 사용기록 기재)
  - 날짜는 CCYYMMDD의 형식으로 표기합니다. (예시) 20190101
  - 변동계수 혹은 표준편차와 당화혈색소 검사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합니다.
  - 가장 최근의 당화혈색소 검사 일자와 수치를 기재합니다.
- ⑤ 총 처방기간은 일 단위로 기재합니다.
  - 제품별 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를 고려하여 총 처방기간을 기재합니다.
  - 총 처방기간은 최대 100일 이내로 처방 가능합니다(다만, 최초처방은 30일 이내)